

공정 주택거래란 무엇입니까?

모든 뉴욕 시민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주택을 이용할 자격이 있습니다. 뉴욕시 인권법은 뉴욕시의 민간 및 공공 주택, 토지, 상업 공간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즉, 판매, 대여 또는 임대를 하는 사람(임대주, 관리인, 건물 관리자, 브로커, 부동산 중개인 포함)은 법에 따라 개인의 실제 실제 또는 인지된 보호 신분으로 인해 차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.

다음의 행위는 불법입니다.

- 주택의 판매, 대여 또는 임대를 거부하는 경우
- 추가 지급을 요구하거나, 더 높은 임대료, 보증금, 또는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
- 임차인의 유형을 제한하거나 특정 유형의 임차인 수락에 대한 거절을 언급한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
- 특정 임차인에게 적절한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혹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
-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 지원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

실제 또는 인지된 보호 신분에 기반

- 연령
- 성 정체성
- 인종
- 장애
- 피부색
- 임신
- 신념/종교
- 성적 지향
- 국적
- 결혼 또는 동거 여부
- 성별
- 소득의 원천(임대에 대한 현금 지원 및 사회보장 소득을 포함한 Section 8, LINC, 또는 FEPS나 공공 지원의 형태로 정부가 제공한 임대 지원을 이용)
- 직업
- 이민 신분
- 자녀 유무
- 가정 폭력,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 신분

뉴욕시에는 주택거래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

공정 주택거래는
여러분의 권리입니다.
여러분의 책임입니다.
법입니다.

NYC 인권 위원회 | 주택 보존 및 개발

[f](#) [t](#) [@](#) [v](#) [M](#) [in](#) @NYCCHR @NYCHousing

#FairHousingNYC

NYC 인권 위원회 | 주택 보존 및 개발



실제 생활에서 귀하가
차별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
되는 사례들

모든 임차인이 뉴욕시의 공정 주택거래에 관해 알아야 할 5가지

- 1** 임대주는 귀하의 보호 신분을 이유로 임대의 제공을 거부하거나, 더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거나,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, 다른 편의 시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. ('공정 주택거래란 무엇입니까?' 부분의 표를 참고하십시오.)
- 2** 귀하는 장애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, 임대주는 그러한 편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과도한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는 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. 합리적인 편의란, 예를 들어, 건물이나 귀하의 아파트에 물리적인 변형을 가하거나 귀하에게 정서적 지원이 되는 애완동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건물의 정책을 변경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.
- 3** 귀하는 모든 입주 가능 주택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귀하는 특정 지역, 이웃, 또는 아파트로 제한 받거나 이끌려 가지 않아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임대주나 중개인은 어떤 아파트에 대해 "오직 가족용"이라거나 또는 임차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"임대할 수 없다"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.
- 4** 임대주는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 지원을 수락해야 합니다. 만일 귀하가 Section 8, LINC, HASA, SSI/SSDI, 또는 기타 공공 지원을 받고 있다면, 여섯 세대 이상의 건물을 소유한 임대주는 그러한 임대 지원을 수락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.
- 5** 귀하는 귀하의 보호 신분에 대하여 다른 임차인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의 괴롭힘이나 위협적 행동이나 언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('공정 주택거래란 무엇입니까?' 부분의 표를 참고하십시오.)

귀하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, **212-416-0197**번으로 전화하셔서 뉴욕시 인권위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.

모든 임대주/부동산 관리자/브로커가 뉴욕시의 공정 주택거래에 관해 알아야 할 5가지

- 1** 귀하는 법에 따른 거주자의 보호 신분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거나, 더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거나,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, 다른 편의 시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, 혹은 수리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 ('공정 주택거래란 무엇입니까?' 부분의 표를 참고하십시오.)
- 2** 보호 신분에 있는 임차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시사하는 광고를 게재하거나 기타의 선언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예를 들어, '바우처 사절' 또는 '아이 사절'이라고 쓴 광고는 위법입니다.
- 3** 대부분의 경우, 부당한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장애가 있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.
- 4** 6세대 이상의 건물에서, 귀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임차인으로부터 정부 제공 임대 지원을 수락해야만 합니다. 귀하는 정부가 제공하는 어떠한 형태의 임대 지원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- 5** 직원들에게 법에 대하여 교육하십시오. 귀하는 귀하를 대신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관리인, 유지 보수 직원, 브로커 및 영업 사원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 및 대리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. 직원 및 대리인이 공정 주택거래법을 알고 있으며, 이를 준수하도록 확인하십시오.

뉴욕시 인권법에 관한 무료 워크샵에 참석하고 싶으시다면 **212-416-0197**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상황 #1

새로운 임대주가 건물에 살고 있는 이민자 가족에게 건물에서 경찰 활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방의 위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가족을 이사하게 하려고 합니다. 이민 신분으로 인한 임차인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은 뉴욕시 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.

상황 #2

여섯 세대가 있는 건물에서 방 2개 아파트의 임대를 Craigslist에 광고합니다. 존은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아파트에 대해 문의하고 2개 아파트에 대한 Section 8 바우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. 브로커는 "죄송합니다. 저희는 Section 8을 받지 않습니다." 라고 말합니다. 정부 제공 임대 지원으로 임대료를 지불 할 것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를 거부하는 것은 뉴욕시 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.

상황 #3

루시는 심한 불안과 공황 장애를 유발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, 그녀의 남동생의 개를 돌볼 때 그러한 상황이 크게 줄어듭니다. 루시의 의사는 그녀가 정서적 지원이 되는 애완동물을 기르도록 권고하지만, 그녀가 애완동물 불가 정책을 고수하는 그녀의 임대주에게 요청했을 때 임대주는 이를 거부하고 그녀에게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위협합니다. 뉴욕시 인권법에 따르면 임대주는 장애를 가진 임차인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편의가 과도한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는 이상, 그러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.